

바로보는 법규·정책

Regulation

사외이사 · 상근감사 선임 및
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유의사항

2025.3.6

감사위원회 지원센터
(Audit Committee Institute)

바로보는 법규·정책

사외이사·상근감사 선임 및
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유의사항

한국거래소가 제시한 결산시기 상장법인 유의사항

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2024사업연도 결산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장참여자에게 결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. 특히 상장법인 유의사항으로 아래 3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.

상장법인 유의사항

1	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에 중요 정보를 포함하고 시장조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 수령 즉시 이를 공시하여야 함
2	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·감사 선임 관련 특별한 주의가 필요
3	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·사업보고서를 제공 : 이는 거래소 및 금융위(금감원) 제출(공시)로 갈음할 수 있음

본 카드뉴스에서는 상장법인 유의사항 중
“사외이사·상근감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유의사항”을
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Source: 한국거래소, “2024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”, 2025.2.6.

바로보는 법규·정책

사외이사 · 상근감사 선임 및
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유의사항

사외이사 선임 의무 및 자격요건

Check Point



상법 제542조의8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

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함
➢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



상법 시행령 제34조

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법인을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회사(비상장 기업 포함)의 이사 · 집행임원 · 감사를 겸직할 수 없고, 해당 상장법인의 계열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음



상법 시행령 제34조

상장법인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, 한 회사에서 6년(계열사 포함 시 9년)을 초과하여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

거래소 조치사항

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
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

Note: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벤처기업(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한함) 및 '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'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 등은 사외이사 선임의무 없음

바로보는 법규·정책

사외이사 · 상근감사 선임 및
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유의사항

상근감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

Check Point



상법 제542조의10 및 상법 시행령 제36조

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상근감사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선임
다만,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상근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



상법 제542조의11, 제542조의12 및 상법 시행령 제37조

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함

-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
이사로 구성해야 함
-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
대표는 사외이사로 하여야 함
- 위원 중 1명 이상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
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해야 함

거래소 조치사항

상법이 정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
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